의안번호	2200579
의 뢰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4.7.5.
추계번호	24E1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1조 8,234억원, 2030년 2조 1,331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조 8,762억원(연평균 1조 9,752억원)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8,234	−18,963	−19,722	−20,511	−21,331	−98,762	−19,752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개정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9의4제5항 (특별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이동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고 있는 이동통신비를 휴대폰 사용자(본인,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그 외)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근로소득자가 지출하는 이동통신비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

○ 추계에 활용한 재정패널조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는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1)]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자료로 근로소득자의 연간 이동통신비를 추정하여 추계에 활용

❑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1)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추계 방법

❑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비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국세통계연보는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규모별 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변화는 재정패널조사 원자료(2021년 귀속)를 활용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수 및 평균 이동통신비 사용료 추정

○ 재정패널조사 자료로 근로소득자를 총급여규모별로 구분하고 이중 이동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는 자의 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 비율을 국세통계연보(2022년 귀속)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에 곱해 총급여규모별 이동통신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수 추정[2)]

-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

○ 개인의 연간 이동통신비 사용료는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 단위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 단위로 배분하여 추정

- 가구별로 가구 총 근로소득에서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동 비율을 가구 단위 통신비에 곱해 가구 통신비를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원별로 배분

- 재정패널조사에서 조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에 기기 할부금(현행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분리할 수 없어 해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이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이동통신비와 같다고 전제[3)]

---

2) 재정패널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8,784 가구) 중 휴대전화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6,151 가구)의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조사됨

3) 현행 이동통신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휴대폰 기기 할부금 및 소액결제 등의 비용은 소득공제(계좌납부 30%, 신용카드 납부 15%) 대상에 포함

❑ 개정안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추정치)에 적용 대상자 수(추정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기준연도 세수효과 추계

○ 총급여규모별 1인당 평균 이동통신비(추정치)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총급여규모별 1인당 추가 세액공제금액 추정

○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기본공제 적용 인원(결정세액 있는 자) 증가율을 곱하여 추계

- 향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은 최근 3년간(2019~2022년) 연평균 증가율(4.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2) 추계 결과

❑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2년 기준 1조 6,2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3년간 기본공제 적용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4.0%)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표 2] 이동통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액 규모	2022년 귀속 국세통계 총급여 인원[1]	이동통신비 지출 인원[2]	연평균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3]	1인당 세액공제금액[4]	2022년 귀속 국세통계 1인당 결정세액	세수효과 (억원)
	A	B	C	D=C×15%	E	G=−min(D , E)×B
합계	13,632,342	9,291,275	−	−		−16,210
1천만 이하	13	9	0.50	0.07	0.8	0
1.5천만 이하	177,969	123,022	0.79	0.12	0.0	−14
2천만 이하	824,105	619,022	0.83	0.12	0.1	−400
3천만 이하	2,894,922	1,968,860	0.93	0.14	0.2	−2,757
4천만 이하	2,314,031	1,654,014	1.07	0.16	0.6	−2,655
4.5천만 이하	983,247	648,314	1.14	0.17	1.1	−1,109
5천만 이하	859,585	576,777	1.31	0.20	1.5	−1,134
6천만 이하	1,397,685	944,660	1.23	0.18	2.2	−1,739
8천만 이하	1,806,448	1,110,713	1.41	0.21	3.8	−2,351
1억 이하	1,058,411	690,852	1.61	0.24	7.2	−1,672
2억 이하	1,146,940	827,519	1.61	0.24	17.4	−2,002
3억 이하	107,365	77,464	1.98	0.30	53.2	−230
5억 이하	41,555	29,982	1.98	0.30	102.3	−89
10억 이하	15,243	15,243	1.98	0.30	213.3	−45
10억 초과	4,823	4,823	1.98	0.30	804.9	−14

주: 1)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인원 수
2)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규모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율을 구한 뒤, 동 비율을 국세통계연보 상의 총급여규모별 인원 수(A)에 곱하여 추정, 다만,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1억 초과 2억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10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동 비율이 산출되지 않아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3) 재정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이동통신비 지출이 있는 자의 연간 휴대폰 요금 추정, 다만, 3억원 초과 구간은 표본 수가 적어 이동통신비 지출 금액 추정이 되지 않아 2억 초과 3억 이하 구간의 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4) 총급여규모별 연간 이동통신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율 적용하여 산출
5) 현행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총급여규모별 1인당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2022 국세통계연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조사」 제15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소득 발생연도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8,234	−18,963	−19,722	−20,511	−21,331	−98,762	−19,752

○ 소득세의 징수시점을 반영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1조 8,234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9조 8,762억원(연평균 1조 9,7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특별세액공제 (안 제59조의4⑤)	−18,234	−18,963	−19,722	−20,511	−21,331	−98,762	−19,752

※ 본 추계결과는 미시자료(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소득세 신고자의 이동통신비 사용액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